

제329회 임시회  
2014.04.14.(월)

# 심 사 보 고 서

○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

충청북도의회  
교육위원회

# 심 사 보 고 서

2014.04.14.(월)

교육위원회

## 1. 심사경과

가. 제출자: 충청북도교육감

나. 제출일자: 2014년 03월 31일

다. 회부일자: 2014년 04월 02일

라. 상정일자: 2014년 04월 11일

(제32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)

마. 주요내용

○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답변, 심사의결(수정가결)

## 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: 행정관리국장 박노화)

가. 제안이유

- 존속기한이 도래한 한시기구(학교폭력예방대책과) 삭제와,
- 학생 야영·수련시설 운영의 내실화 및 교육지원청의 단위학교 지원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교육지원청 소속기관인 학생야영장을 충청북도학생종합수련원으로 통합하고,
- 충청북도학생종합수련원 하부조직 중 보령교육원 및 제주교육원

을 직속기관으로 분리하는 한편,

- 「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」 개정에 따라 지역교육청의 명칭을 교육지원청으로 변경하며,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.

## 나. 주요내용

- 1) 한시기구 중 존속기한(2014.2.28.)이 도래한 학교폭력예방대책과를 삭제함(안 제6조제2항)
- 2) 충청북도학생종합수련원의 위치와 원장의 업무를 변경함(안 제20조제1항, 제20조제2항, 제22조제3호)
  - 가) 충청북도학생종합수련원의 위치 중 “충청남도 보령시 해수욕장13길 14-17을 삭제하고, 교육지원청 소속기관인 학생야영장의 위치와 “충청북도 괴산군 칠성면 쌍곡로 515”를 추가함.
  - 나) 원장의 업무로 “교직원 연수 및 후생·복지에 관한 사항”을 추가함
- 3) 충청북도학생종합수련원의 하부조직 중 “보령교육원”과 “제주교육원”을 분리하여 “충청북도교육청보령교육원”과 “충청북도교육청제주교육원”을 설치하고, 설치 목적 및 위치, 원장의 업무를 정함(안 제41조, 제42조, 제43조, 제44조, 제45조, 제46조)
- 4) 교육지원청 소속기관인 학생야영장을 삭제함(안 제47조, 제50조, 별표4)
- 5) 「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」 개정에 따라 “지역교육청”을 “교육지원청”으로, “지역교육청 소속기관”을 “교육지원청 소속기관”으로 변경함(안 제1조, 제2조, 제4조, 제41조)

- 6)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함(안 제1조, 제2조, 제8조제1항, 제9조, 제11조제1항, 제12조, 제14조제1항, 제15조, 제17조제1항, 제18조, 제19조제5호, 제20조제1항, 제21조, 제23조제1항, 제24조, 제26조제1항, 제27조, 제28조제3호, 제29조, 제32조제1항, 제35조제1항, 제47조, 제48조제2항, 제49조제2항, 제51조제2항)

### 3. 검토보고 요지

#### (검토보고: 수석전문위원 정대희)

-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존속기한이 도래한 한시기구의 삭제와 교육지원청 소속기관의 재편, 충청북도교육청의 직속기관 재편 및 신규설치, 법제처의 「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」에 따라 조문 내용을 바르게 정비한 것으로,
- 한시기구로 설치한 학교폭력예방대책과를 존속기간 만료(2014.2.28.)로 조례에서 삭제하고,
- 학생 야영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교육지원청 소속 학생야영장을 충청북도학생종합수련원으로 통합하면서, 원장의 업무에 “교직원 연수 및 후생·복지에 관한 사항”을 추가하였으며,
- 충청북도학생종합수련원의 하부조직 중 2003.7.1.개원한 임해수련운영부와 2014.3.1.부터 운영하는 제주교육원의 조직 및 예산 규모 본원과의 거리 등을 감안, 충청북도학생종합수련원에서 분리하여 충청북도교육청의 직속기관으로 “충청북도교육청보령교육원”과 “충청북도교육청제주교육원1)”을 설치하고 원장의 업무를 정함.

1) 2012.3.7. 제307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‘충청북도제주교육수련원’ 설립계획안의 내용 중 직속기관 운영 승인

- 또한, 「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」 개정에 따라 “지역교육청” 명칭을 “교육지원청”으로 하는 등 타당하다고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: “생략”

5. 토 론 요 지: “생략”

6. 심 사 결 과: “수정가결”

7. 수 정 안 요 지:

- 발의일자 및 발의자: 2014. 4. 11. 전용천 의원, 이광희 의원
- 수정이유 : 본원과 원거리에 위치하여 하부조직 관리에 어려움이 있고, 현지 유관기관과의 업무 협조 등 독립기관의 빠른 설치가 필요하여 충청북도교육청의 의견을 들어 조례안의 내용 중 시행시기를 수정하고자 하는 것임.
- 주요 수정내용  
부칙 제1조(시행일)을 “이 조례는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”를 “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”로 수정함.

8. 소 수 의 견 요 지: “없음”

9. 기타 필요한 사항: “없음”

10. 첨부서류: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 
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##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부칙 제1조(시행일) “2014년 7월 1일”을 “공포한 날부터”로 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원           안	수   정   안
부칙 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<u>2014년 7</u> <u>월 1일부터</u> 시행한다.	부칙 제1조(시행일) ----- 공포한 날 부터 -----

##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”를 “제12조에 따라”로 하고, “지역교육청 소속기관”을 “교육지원청 소속기관”으로 하며, “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”를 “필요한 사항을”로 한다.

제2조 중 “각호”를 “각 호”로 하고, “규칙”을 “교육규칙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2호 중 “지역교육청”을 “교육지원청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호 중 “지역교육청 소속기관”을 “교육지원청 소속기관”으로 한다.

제4조의 제목 및 제4조 중 “지역교육청”을 “교육지원청”으로 한다.

제6조제2항 중 “학교폭력예방대책과 및 방과후학교지원단”을 “방과후학교지원단”으로 한다.

제14조제1항 중 “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”를 “제27조에 따라”로 한다.

제20조제1항 중 “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”를 “제26조에 따라”로 하고, “정립하기 위하여”를 “정립하고, 교직원의 후생·복지를 위하여”로 한다.

제20조제2항 중 “충청남도 보령시 해수욕장13길 14-17”을 “충청북도 충주시 가금면 진여울길 65, 충청북도 제천시 청풍면 학현소야로 393, 충청북

도 옥천군 이원면 용방1길 79-14, 충청북도 영동군 상촌면 물한4길 8, 충청북도 괴산군 청천면 후평도원로 153-3, 충청북도 괴산군 칠성면 쌍곡로 515"로 한다.

제22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### 3. 교직원 연수 및 후생·복지에 관한 사항

제29조제1항 중 “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”를 “제54조에 따라”로 한다.

제41조부터 제46조를 제47조부터 제52조로 한다.

제12절(제41조부터 제43조까지)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#### 제12절 충청북도교육정보령교육원

제41조(설치) ① 법 제32조 및 「청소년기본법」 제26조에 따라 해양수련활동을 통해 학생들의 진취적 기상을 신장하고, 인격을 도야하며, 애국애족하는 학생상을 정립하고, 교직원의 후생·복지를 위하여 충청북도교육정보령교육원(이하 "보령교육원"이라 한다)을 설치한다.

② 보령교육원은 충청남도 보령시 해수욕장13길 14-17에 둔다.

제42조(원장) 보령교육원에 원장을 두며, 원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 업무를 총괄하고, 소속공무원을 지휘·감독한다.

제43조(업무) 보령교육원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.

1. 각급학교 학생들의 해양수련활동 계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
2. 청소년 단체 단원들의 해양수련활동
3. 교직원 연수 및 후생·복지에 관한 사항

제13절(제44조부터 제46조까지)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#### 제13절 충청북도교육청제주교육원

제44조(설치) ① 법 제32조에 따라 학생들에게 체험활동의 장을 제공함으로써 바른 인성과 창의성을 겸비한 민주시민을 육성하고, 교직원의 자질 향상과 후생·복지증진을 위하여 충청북도교육청제주교육원(이하 “제주교육원”이라 한다)을 설치한다.

② 제주교육원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광지9길 57에 둔다.

제45조(원장) 제주교육원에 원장을 두며, 원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 업무를 총괄하고, 소속 공무원을 지휘·감독한다.

제46조(업무)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.

1. 학생 체험활동 및 전지훈련을 위한 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
2. 학생 체험활동 프로그램 개발·보급
3. 교직원 연수 및 후생·복지에 관한 사항

제4장의 제목 “지역교육청 소속기관”을 “교육지원청 소속기관”으로 한다.

제47조(종전의 제41조)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47조(설치) 법 제32조에 따라 교육지원청 소속기관으로 도서관, 학생회관, 교직원복지회관, 영어체험센터를 둔다.

제50조(종전의 제44조)를 삭제한다.

제8조제1항, 제11조제1항, 제17조제1항, 제23조제1항, 제26조제1항, 제32조제1항 및 제35조제1항 중 “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”를 각각 “제32조에 따라”로 한다.

제9조, 제12조, 제15조, 제18조, 제21조, 제24조, 제27조, 제48조제2항(종전의 제42조제2항), 제49조제2항(종전의 제43조제2항) 및 제51조제2항(종전의 제45조제2항) 중 “통할”을 각각 “총괄”로 한다.

제19조제5호 및 제28조제3호 중 “기타”를 각각 “그 밖에”로 한다.

별표 4를 삭제한다.

## 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 ① 충청북도교육청 학교체육진흥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2항 중 “교수학습지원과장”을 “중등교육과장”으로 한다.

- ② 충청북도교육감 소속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등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중 “영동학생야영장”을 “충청북도학생종합수련원(영동학생야영장)”으로, “제천학생야영장”을 “충청북도학생종합수련원(제천학생야영장)”으로 한다.

## 관계 법령 발췌

□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[시행 2014.2.13.] [법률 제12394호, 2014.2.13.]

제32조(교육기관의 설치) 교육감은 그 소관 사무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 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.

□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 
[시행 2013.12.12.] [대통령령 제24889호, 2013.12.4.]

제7조(한시기구의 설치·운영) ① 교육감은 긴급히 발생하는 한시적 행정수요에 대처하거나 일정 기간 후에 종료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한시기구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 이 경우 기존의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여야 한다.

② 본청에 한시기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으로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의 업무량과 업무의 중요성이 있어야 한다.

③ 한시기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1년 이상의 업무량이 있어야 한다.

④ 한시기구의 존속기간은 3년의 범위에서 해당 시·도의 조례로 정한다.

⑤ 한시기구의 존속기한 연장은 사업추진의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 차례만 할 수 있다.

제12조(직속기관 등의 하부조직 설치) ① 법 제32조에 따라 설치되는 직속기관과 지역교육청 소속 기관의 조직과 공무원의 직급은 시·도 교육청 간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.

② 직속기관과 지역교육청 소속 기관의 장의 직급, 하부조직 및 그 사무 분장에 관한 사항은 해당 시·도의 조례 또는 조례의 위임에 따른 교육규칙으로 정한다.